

#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



1871 도국어 번역본

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℃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.

## 온열질환 예방조치

- ✓ 작업장소에 온·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
- ✓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
- ✓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(쉼터 및 그늘진 장소) 설치



체감온도 계산기

##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

**물**

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

**냉방장치**



- ✓ 폭염작업 시 (이동식)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·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
- ✓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

**휴식**



- ✓ 체감온도 31℃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
- ✓ 체감온도 33℃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

**보냉장구**



- ✓ 냉각의류,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

**119 신고**



- ✓ 온열질환자·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
- ✓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

##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

**체감온도 33℃ 이상**  
폭염주의보

- ✓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
**체감온도 35℃ 이상**  
폭염경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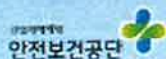
- ✓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

**체감온도 38℃ 이상**  
폭염중대경보

- ✓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


고용노동부



안전보건공단



질병관리청

